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22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7. 8)
상정

○ 제17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7. 8)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세정과장 심 명 식)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17호, 2010. 12. 27.개정 · 2011. 1. 1. 시행)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특1등급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특1등급 호텔업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하는 경우에는 2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을 공제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6조의3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2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6조의3(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